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안 번호	2035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고령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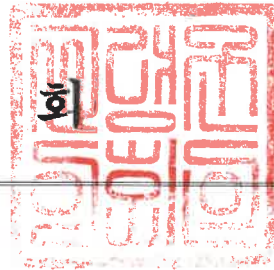
○ 의결연월일 : 2023. 9. 15.

○ 의결내용

기획감사실-8865(2023. 9. 5)호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 붙임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용」

고령군의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의장

2023년 9월 15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용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비고
합 계	485,278,000	
일반회계	470,002,000	
특별회계	15,276,000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내용

(단위 : 천원)

세 출 예 산			
회계별	조직별	증감내역	세부내역
<b>총 계</b>		<b>△2,188,000</b>	
<b>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b>	소 계	△2,188,000	
	기획감사실	0	
	총 무 과	0	
	주민복지과	0	
	가족행복과	△40,000	- 고령 FC-18 유소년축구단 지원
	민 원 과	0	
	재 무 과	0	
	투자유치과	0	
	인구정책과	0	
	지역경제과	△63,000	-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 - 버스터미널 내 안전시설물 설치
	관광진흥과	0	
	문화유산과	△65,000	- 포털사이트를 통한 세계유산 홍보
	도 시 과	0	
	군민안전과	△2,020,000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
	환 경 과	0	
	건 설 과	0	
	건축디자인과	0	
	농업정책과	0	
	축산정책과	0	
	산림녹지과	0	
	보건소	0	
	농업기술센터	0	
	의회사무과	0	
	시설사업소	0	
	대가야박물관	0	
	환경사업소	0	
	읍면	0	
	소 계	0	
주민복지과	0		
환 경 과	0		
건 설 과	0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054-950-6031

##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36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고령군수

○ 의결연월일 : 2023. 9. 15.

○ 의결내용

기획감사실-8865(2023. 9. 5)호에 제출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의회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의장  
2023년 9월 15일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고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고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68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로 한다.

제2조(「고령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의 개정)

고령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5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으로 한다.

### 제3조(「고령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고령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7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한다.

### 제4조(「고령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고령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령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고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2”를 “「수도법」 제30조”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한다.

### 제5조(「고령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령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054-950-6052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37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고령군수

○ 의결연월일 : 2023. 9. 15.

○ 의결내용

기획감사실-8865(2023. 9. 5)호에 제출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  
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고령군의회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를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5일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 1. 제안이유

‘고령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을 위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고령군의회 동의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및 재계약 대상시설

센터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센터장	운영방법		비고
				현재	운영계획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대가야읍 향교길 25	100㎡ (20명)	김민정	직영	민간위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	다산면 다산로 685-12 (다산교회교육관)	147㎡ (29명)	정순희	민간위탁 사)다함께 행복한복지누리 (대표: 기세탁)	재계약	※ 2023. 9. 30. 위탁 만료

##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필요 아동에 대한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발굴·제공에 관한 사무 전반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주요업무: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대상 상시·일시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필요 시 식사) 제공 등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

## 다. 민간위탁 예산

- 예 산 액: 265,907천원 (개소당 132,953천원)

※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의의의**

**의의의**

### 가.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나. 필요성

-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 민간에 관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연속성, 전문성이 확보되어 효율성 증대

○ 효율성

- 인건비, 제경비 등의 비율이 높아 위탁 시 경제적 효율성 확보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 및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사전 승인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

#### 5.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성과

-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의 거점 기능 수행
- 다산초등학교와 연계·수시로 정보를 교류하여 공백 없는 방과 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서비스 평가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발굴
- 지역사회를 매개로 한 유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 6. 참고사항

가. 고령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계획 : 붙임 참조

나. 관련법규 : 붙임 참조

(붙임 1)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계획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해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

### 2. 목적 및 필요성

- 초등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돌봄사업의 전문성 제고

### 3. 민간위탁 대상

센터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센터장	운영방법		비고
				현재	운영계획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대가야읍 향교길 25	100㎡ (20명)	김민정	직영	민간위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	다산면 다산로 685-12 (다산교회교육관)	147㎡ (29명)	정순희	민간위탁 사)다함께 행복한 복지누리 (대표자 : 기세륙)	재계약	※ 2023. 9. 30. 위탁 만료 (2020.10.01. ~2023.9.30./3년)

## ❖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 결과

### ○ 민간위탁의 성과

-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의 거점 기능 수행
- 다산초등학교와 연계·수시로 정보를 교류하여 공백 없는 방과 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서비스 평가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발굴
- 지역사회를 매개로 한 유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시간 : (학기 중) 10:00 ~ 19:00 / (방학 중) 09:00~18:00

### ○ 아동 돌봄 실적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현원/정원(명)	29/29	29/29	27/29	

###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센터장	코디네이터	돌봄선생님	비고
인원(명)	4	1	1	2	

### ○ 프로그램 운영 내용

- 일상생활지도 : 아동출결 및 건강상태 체크
- 생활안전교육 : 안전에 대한 인식 함양
- 숙제 및 독서지도 : 독서습관 및 학습능력 배양
- 신체활동 및 놀이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과 건강촉진
- 체험활동 : 재능 개발, 자존감 향상, 정서적 안정 도모
- 문화예술체험 : 문화이해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 도모

###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시기 : 2022년 8월
- 조사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 가구유형 : 맞벌이 90.6%
- 조사결과 : 응답자의 97% 이상이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에 만족,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호응도를 보임

####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명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 위탁사무 내용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5. 민간위탁 예산

○ 예산액: 265,907천원 (2023년도 본예산 기준, 개소당 132,953천원)

○ 지원 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계	265,907	83,484	54,727	127,696	2개소
(국고보조) 인건비	142,968	71,484	21,445	50,039	매년
(국고보조) 운영비	24,000	12,000	3,600	8,400	매년
(도비보조) 사업비	12,000	-	3,600	8,400	매년
(도비보조) 인건비 및 수당	86,939	-	26,082	60,857	매년

※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변동,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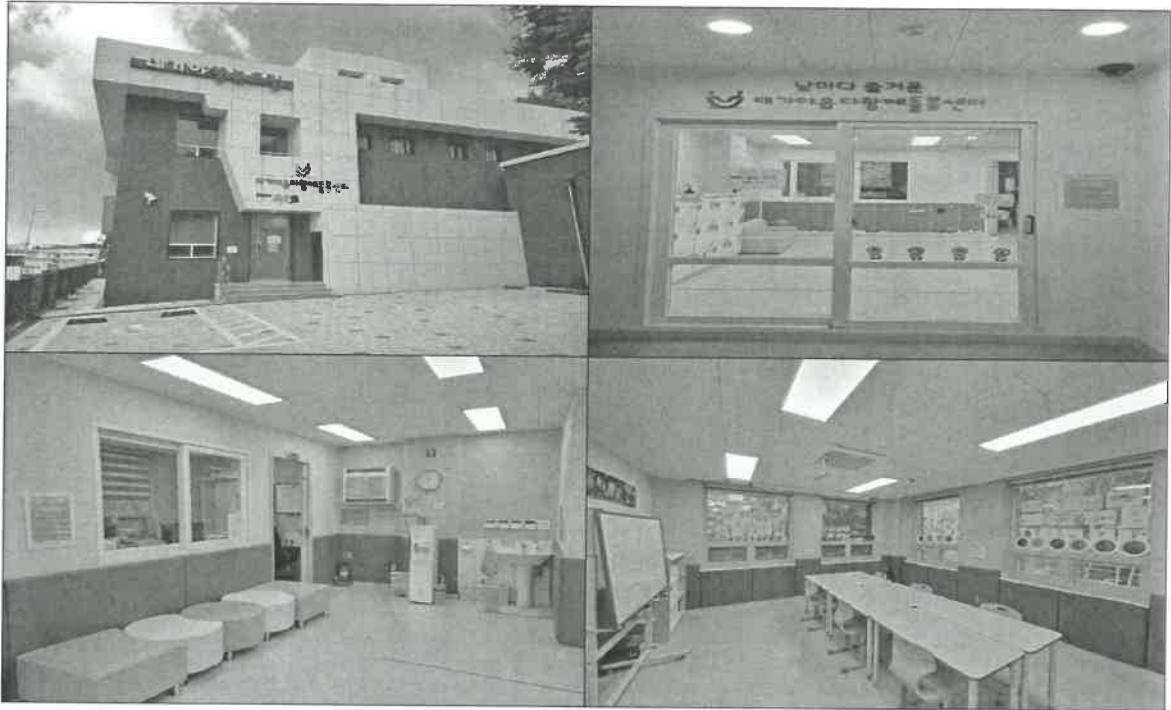
## 6. 민간위탁 기대효과

- 초등아동 돌봄 운영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초등 돌봄 구축에 기여
- 종사자의 근로 연속성 및 고용 안정성 확보
-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는 지역 중심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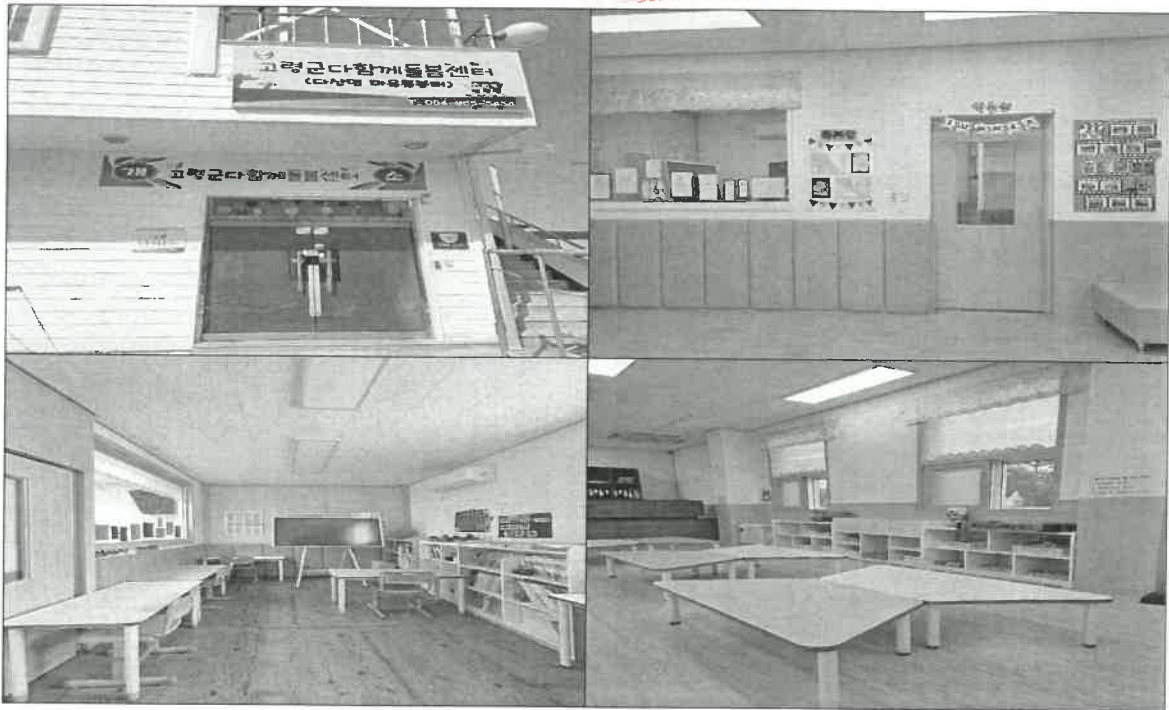
2024. 11. 11. 11:00

# 사 진 자 료

□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대가야읍 향교길 25 청춘누리관 1층)



□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 (다산면 다산로 685-12 다산교회 교육관 1층)



(붙임 2)

## 관 련 법 규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민우익

행복리

## ■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

- (근거)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가능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가족행복과	
연 락 처	(054) 950 - 7061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38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고령군수

○ 의결연월일 : 2023. 9. 15.

○ 의결내용

기획감사실-8865(2023. 9. 5)호에 제출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고령군의회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의장  
2023년 9월 15일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해 고령군의회의 임시회의 안으로 상정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 I 심 의 안 건

#### ○ 취 득

(단위 : m<sup>2</sup>, 백만원)

사업명	토지면적	건물면적	소요예산	비고
합계	5,301	747.71	1,650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 (관리계획)	1,025	747.71	1,350	지역경제과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부지 매입 변경 (관리계획 변경)	4,276	-	300	농업기술센터

## II 주요 내용

### 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

#####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 사업목적

- 시장길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장 이용자의 편의 도모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 ○ 시장길 주차장 현황

구 분	주차장 수		주차면 수	
	대가야읍	시장길	대가야읍	시장길
노상주차장	3	0	65	0
노외주차장	12	0	615	0

- 대가야읍 주차면 수 : 680면 중 시장길 내 주차면 수 0면.
- 시장길 인근에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도로 폭이 좁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음.
-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장날이 아닌 날에도 인도 및 갓길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장 방문객의 통행에 불편함이 많음.
-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인한(단속 유예 30분) 주차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시장길 상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 사용용도 : 공영주차장(노외)

나. 소요예산

- 부지매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토지매입	건물	기타
군비	1,350	1,020	330	

다.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025㎡
- 주요시설 : 시장길 공영주차장

라. 기준가격 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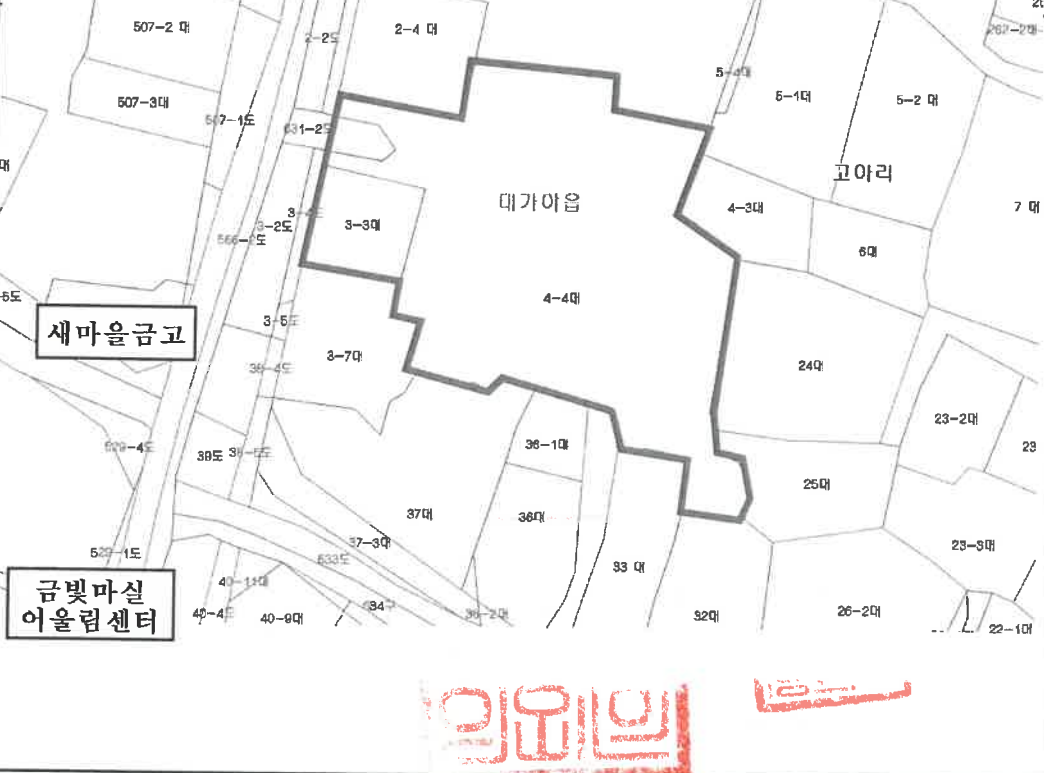

※ 토지 : 공시지가, 건물 : 건물시가표준

구분	일련 번호	재산표시			면적 (㎡)	기준가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지번	지목		
총계						803
소계(토지)					1,025	706
소계(건물)					747.69	97
토지	1	대가야읍 고아리	4-4	대	919	592
건물	2	대가야읍 고아리	4-4	대	671.15	88
토지	3	대가야읍 고아리	631-1	대	26	24
토지	4	대가야읍 고아리	3-3	대	80	90
건물	5	대가야읍 고아리	3-3	대	76.54	9

마. 사업내역

- 공사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6월
- 공사비 : 2024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300백만원 확보

사. 사업위치도

<p>제 목</p>	<p>시장길 곁역주차장 주석부지</p>
<p>위 치</p>	
<p>지적도</p>	
<p>사 진</p>	

## 2.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부지 매입 (관리계획 변경)

### 가. 사업목적 및 용도

#### ○ 사업목적

- 대서마늘 우량종구 보급체계 구축계획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조직배양 마늘 종구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고자 함

#### ○ 사용용도 :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포장으로 활용

- ※ '22.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완료(22년 제4회) 후 부지 위치 변경으로 관리계획 변경 심의

### 나. 사업기간 : 2023년 하반기

- '23. 8월 : 군비 추가예산 확보
- '23. 9월 : 토지 매수협약
- '23. 10월: 토지 매수 행정절차 완료
- '23. 11월: 성토작업 완료

### 다. 소요예산

#### ○ 총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계	300		300	
국 비				
도 비				
군 비	300		300	

○ 재원별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토지매입	건 물	주차장 및 부대토공	기 타
계	300	280		20	
국 비					
도 비					
군 비	300	280		20	

라. 사업규모

○ 부지면적 : 4,276㎡

마. 기준가격 명세

※ 토지 : 공시지가, 건물 : 건물시가표준

구분	일련 번호	재산표시			면적(㎡ )	기준가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지번	지목		
총 계					4,276	113
소 계						
토지	1	대가야읍 외리	549	답	626	16
	2	대가야읍 외리	550	답	2,718	73
	3	대가야읍 외리	551	답	932	24

바.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의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

사. 사업위치도

<p>제 목</p>	<p>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부지 매입 변경</p>
<p>위 치</p>	<p>고령군 대가야읍 외리 549,550,551</p>
<p>지적도</p>	
<p>사 진</p>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재무과	
연 락 처	(054) 950-6154

##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39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고령군수

○ 의결연월일 : 2023. 9. 15.

○ 의결내용

기획감사실-8865(2023. 9. 5)호에 제출된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의회



#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5일



##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
3. 공중위생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령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2. 고령군 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3.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4.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선진지 견학 등 교육사업
5.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사업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사업 계획서

단체(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1. 사업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모 :  
나. 시설 :
5. 사업계획내용

명칭	수량	금액(원)
합계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견적서 1부

〈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관광진흥과	
연 락 처	054-950-6691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40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고령군수

○ 의결연월일 : 2023. 9. 15.

○ 의결내용

기획감사실-8865(2023. 9. 5)호에 제출된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의회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의장  
2023년 9월 15일

##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대책

제3조제3항제1호나목 중 “지역군부대 작전담당 장교”를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리전담당 간사 : 보도업무 담당 부서장

제4조제3항제2호가목 중 “향토방위훈련”을 “지역방위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리전담당 간사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나.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제4조의2 중 “발생시 제5837부대 6대대에서 작성한”을 “발생 시 또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을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제2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군민안전과	
연 락 처	054-950-6442



##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41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고령군수

○ 의결연월일 : 2023. 9. 15.

○ 의결내용

기획감사실-8865(2023. 9. 5)호에 제출된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의회



#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의장  
2023년 9월 15일



##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고령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절차) 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제7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 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군민안전과	
연 락 처	054-950-6645



##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42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고령군수

○ 의결연월일 : 2023. 9. 15.

○ 의결내용

기획감사실-8865(2023. 9. 5)호에 제출된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의회



#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의장  
2023년 9월 15일



##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을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법」 제20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추진협의체”라 한다.)”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7항) 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건축, 도시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과 디자인, 도시계획, 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로 4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 가목, 17호~23호, 25호, 26호, 29호 제외) 제32조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10층”을 “4층”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디자인과	
연 락 처	054-950-6741



##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의안  
번호

2043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고령군수

○ 의결연월일 : 2023. 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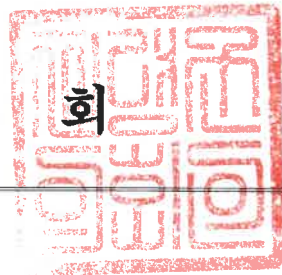
○ 의결내용

기획감사실-8865(2023. 9. 5)호에 제출된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고령군의회



#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를 의결한다.

고령군의회의장  
2023년 9월 15일



##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 1. 제안이유

2023년 12월 31일 소각시설 민간위탁 사업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원활한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7조에 의거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구분	시설명	위탁기간	수탁자	비고
4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024. 1. 1. ~ 2026. 12. 31. (3년간)	공개모집 (협상에 의한 계약)	현수탁자 (에이치엘 에코텍(주))

#### 나. 위탁내용

##### ○ 위탁사무

- 소각시설(16톤/일)의 운전 및 유지관리
- 환경관련법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등 제반사항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 3. 추진 계획 및 일정

- 2023. 06. :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 준공
- 2023. 07. : 성과 평가 용역 착수(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운영계획 수립
- 2023. 08. : 군 의회 사전설명
- 2023. 09. : 군 의회 동의(의안 의결)  
수탁 사업자 모집공고(G2B) 및 평가위원(후보자) 접수
- 2023. 11.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우선 협상자 선정)
- 2023. 12. : 위·수탁 계약



# 소각시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계획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반영한 시설관리로 소각시설 내구 연한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함

## 1. 시설 현황 (2021. 1. ~ 2023. 8. 현재)

- 대 상 시 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6톤/일(연속 연소식 스토커 방식)
- 수탁 업체명 : 에이치엘에코텍(주)
- 근 무 인 원 : 15명(4조 2교대, 24시간 운영)
- 위 탁 범 위
  -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
  - 환경관련법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 소각시설 부대시설 유지관리
  - 기타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 탁 비 : 1,508백만원/년(위탁운영비 : 1,119백만원, 시설운영비 : 389백만원)  
※ 위탁운영비(인건비, 관리비, 이윤 등), 시설운영비(유지관리비, 약품비 등) (2023년 기준)

## 2.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2호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3. 민간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

- 2023. 12. 31. 민간위탁 사업 계약 만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
  - 2014. 6. : 신규 소각시설 설치
  - 2014. 7. ~ 2017. 6. : 민간위탁(협상에 의한 계약, 3년)
  - 2017. 7. ~ 2020. 12. : 민간위탁(연장계약, 3년 6개월)
  - 2021. 1. ~ 2023. 12. : 민간위탁(협상에 의한 계약, 3년)

#### 4. 민간위탁 운영 예산 소요액 추정 (2024년 기준)

-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운영비 : 1,627,030천원(119,024천원 증) → 낙찰율에 따라 변동 가능
- ※ 2023년 : 1,508,006천원

구 분	금 액	내 역
인건비	764,968,344	직접인건비
관리비	142,908,090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시설운영비	386,675,242	유지관리비, 약품비, 재처리비 등
일반관리비(9%)	81,708,879	-
이윤(10%)	98,958,531	-
부가세(10%)	147,521,909	-
보험료	4,289,700	손해배상 및 환경책임보험료
합계	1,627,030,695	

#### 5. 수탁자 선정 및 계약기간 산정

##### ○ 계약방법 별 검토의견

- 시설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구 분	장점	단점	비고
경쟁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선정 시 투명성 확보</li> <li>- 예산 절감 효과</li> <li>- 균등한 기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자의 낙찰 우려</li> <li>- 적은 입찰단가로 부실 운영 및 서비스 질 저하</li> <li>-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비나 기술 등에 투자 기피현상</li> </ul>	
협상에 의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기술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시행</li> <li>-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업체와 계약 가능</li> <li>- 수의계약 단점을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평가 및 계약 추진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li> <li>-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업체 불만</li> </ul>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기술 축적 가능</li> <li>-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능성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성, 공정성 및 특혜 시비 발생</li> <li>-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업체 불만</li> </ul>	

○ 계약기간 별 검토의견

-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적 처리 기반 확보 필요
- 단계별 평가 및 계약추진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저감하기 위하여  
고령군 조례에 의거 3년(장기간)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장기 계약에 따른 부실운동을 막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구 분	제 1안 (단기간)	제 2안 (장기간)	비고
계약기간	- 1년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2)	- 수년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 4년 이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7조)	
장 점	- 관련업체 참여기회 확대 - 부실업체 교체 용의	- 업무의 계속성 확보 - 기술축적 가능 - 서비스 질 향상 -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단 점	- 업무의 연속성 결여 - 기술축적 미비 - 책임의식 결여 - 단계별 평가 및 계약 추진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 낭비	- 부실업체 선정 시 교체 곤란 - 불가변동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조장 필요	

- ※ 민간위탁 1기(2014. 7. ~2017. 6.) : 3년 계약
- 민간위탁 2기(2017. 7. ~2020. 12.) : 3년 6개월 계약
- 민간위탁 3기(2021. 1. ~2023. 12.) : 3년 계약

6.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3. 06. :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 준공
- 2023. 07. : 성과 평가 용역 착수(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운영계획 수립
- 2023. 08. : 군 의회 사전설명 및 동의
- 2023. 09. : 군 의회 동의(의안 의결)  
수탁 사업자 모집공고(G2B) 및 평가위원(후보자) 접수
- 2023. 11.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우선 협상자 선정)
- 2023. 12. : 위·수탁 계약

# [붙임 1] : 폐기물 소각 현황(2021~2022)

※ 소각시설 처리 용량 : 16톤/일

## ○ 2021년 현황

월별	목록	분 류	소각량 (톤)	평균 소각량 (톤/일)	가동일 (정기보수 일)
2021년 1월		생활폐기물	504.42	16.3	31
2021년 2월		"	432.87	16.0	27(1)
2021년 3월		"	312.66	16.5	19(12)
2021년 4월		"	493.06	16.4	30
2021년 5월		"	497.35	16.0	31
2021년 6월		"	304.14	16.0	19(11)
2021년 7월		"	287.9	14.4	20(11)
2021년 8월		"	504.62	16.3	31
2021년 9월		"	487.26	16.2	30
2021년 10월		"	507.61	16.4	31
2021년 11월		"	284.47	15.8	18(12)
2021년 12월		"	504.59	16.3	31
합 계			5,120.95	16.1	318(47)

## ○ 2022년 현황

월별	목록	분 류	소각량 (톤)	평균 소각량 (톤/일)	가동일 (정기보수 일)
2022년 1월		생활폐기물	489.21	15.8	31
2022년 2월		"	435.6	15.6	28
2022년 3월		"	296.23	16.5	18(13)
2022년 4월		"	458.68	15.3	30
2022년 5월		"	426.81	13.8	31
2022년 6월		"	476.93	15.9	30
2022년 7월		"	270.81	15.0	18(13)
2022년 8월		"	486.16	15.7	31
2022년 9월		"	435.19	15.0	29(1)
2022년 10월		"	509.59	16.4	31
2022년 11월		"	272.42	15.1	18(12)
2022년 12월		"	543.23	17.5	31
합 계			5100.86	15.6	326(39)

**[붙임 2] : 유사 소각시설 사례 (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의성군	울진군	영덕군	고령군
시설용량	15톤/일	15.6톤/일	20톤/일	16톤/일
운영주체	지자체	위탁	위탁	위탁
소각방식	화격자식	화격자식	화격자식	화격자식
가동방식	연속식	연속식	연속식	연속식
처리량	3,865톤	4,668톤	5,979.6	5,120
운영인력	14명	15명	15명	15명
유지관리비	1,600백만원	1,719백만원	1,277백만원	1,350백만원

인위인 인위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환경사업소	
연 락 처	(054) 950 - 7050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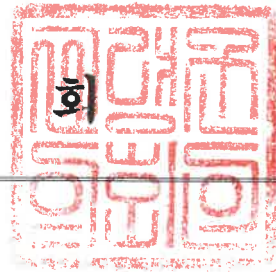
의안 번호	2044
----------	------

- 제출연월일 : 2023. 9. 15.
- 제출자 : 김명국 의원 외 5명
- 의결연월일 : 2023. 9. 15.
- 의결내용

김명국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고령군의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5일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1. 주 문

-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제29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고령군 산불피해지 별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하고자 함.



### 2. 제안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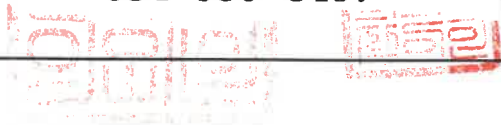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고령군에서 시행한 산불피해지 별채사업 비위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자 추가 상정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의회사무과	
연 락 처	054-950-6407



## 고령군 산불피해지 별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의안 번호	2045
----------	------

- 제출연월일 : 2023. 9. 15.
- 제출자 : 김명국 의원 외 5명
- 의결연월일 : 2023. 9. 15.
- 의결내용

김명국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고령군 산불피해지 별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 산불피해지 별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고령군의회



고령군 산불피해지 별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5일



## 고령군 산불피해지 별채사업 관련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1. 제안이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고령군에서 시행한 산불피해지 별채사업 비위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2023년 6월 고령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산림녹지과 “산불피해지 별채사업”의 부적정한 설계변경 내역 지적
- 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자체감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감사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에 대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다. 의회에서는 수사권, 이행강제력 등이 없어 한계가 있으므로, 최상위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 3. 관계법령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의회사무과	
연 락 처	054-950-6407

